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2013년도 사업(결산) 실적 및 2014년도 사업추진 계획

2014. 1.27.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 총무 : 이현승(☎053-589-7748) ○ 회계 : 장혜영(☎053-589-7700)

목 차

■ 2013년도 사업보고서	1
■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	4
■ 2013회계연도 결산서	6
■ 2014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9
■ 정관 개정 결과	15

I. 2013년도 사업보고서

1.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현황

가.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사항

구 분	내 용
법 적 근 거	「민법 제32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
목 적	본회는 계명문화대학 전 구성원의 작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노력하고, 나눔을 통한 새로운 사회봉사 및 기부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2.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봉사단 결성 및 운영 3. 자원봉사단체 지원, 이웃돕기, 긴급구호활동 지원 4. 결손가정, 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방문 및 재정지원 5. 교내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 인 명	사단법인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소 재 지	704-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700)
발 기 인 구 성	2010년 09월 10일 10인의 발기인 구성
법인설립 허가	2010년 10월 25일 설립허가(대구광역시 제2010-22호)
법 인 성 립	2010년 11월 01일(등록번호 171821-0002810)
법 인 등 기	2010년 11월 01일(등기번호 000281)
사 업 자 등 록	2010년 11월 24일(고유번호 503-82-12530)
자정기부금단체지정	2011년 6월 30일(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0 / 2011. 6.29.)
대 표 자	김 남 석
이 사 회	이사장 김남석 이사 김의훈, 이사 박상화, 이사 이영순, 이사 임헌길, 이사 김동현
감 사	감사 전재표, 감사 김은영
사 무 국	상근이사 김의훈, 사무국장 이대열, 총무 이현승, 회계 장혜영
사 업 년 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정관 제32조)

나. 임원현황

1) 이사

직 위	성 명	소 속	임 기	비고
이사장	김남석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2013.11.01. ~ 2016.10.31.	3년
이 사 (상근이사)	김의훈	계명문화대학교 교목실		
이 사	박상화	계명문화대학교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이 사	이영순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이 사	임헌길	계명문화대학교 교학부		
이 사	김동현	계명문화대학교 학생지원팀		

2) 감사

직위	성 명	소 속	임 기	비고
감 사	전재표	계명문화대학교 경영과	2013.11.01. ~ 2016.10.31.	3년
감 사	김은영	계명문화대학교 재무총괄팀		

다. 사무국 현황

직위	성명	소속	임기	비고
사무국장	이대열	계명문화대학교 총무부	2013. 2.16.~2015. 2.15.	
총무	이현승	계명문화대학교 교목실	2012. 2. 1.~ 별도발령일까지	
회계	장혜영	계명문화대학교 총무관리팀	2013. 2.16.~2014. 2.15.	

라. 회원현황(회비납부 회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기말	당기증감		당기말
		감	증	
회원수	180	10명	14명	184

※ 2013.12월 회비 납부 후 1명 탈퇴하여 2013.12월 회비 납부 기준 184명 / 2013.12.31.기준 183명

2. 사업추진 현황 보고

집행일자	사업구분	사업내역	비고
2013. 1.14.	정기이사회	- 출석의원 : 5명(총원 6명) - 의결사항 · 2012년도 사업실적 및 현황보고 ·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 ·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 2013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안) 심의 ·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 의결	중회의실
2013. 1.24.	정기총회	- 참석회원 : 143명(총원 180명) - 의결사항 · 2012년도 사업실적 및 현황보고 ·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승인 · 201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 2013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안) 의결 · 제2기 임원개선: 이사6명, 감사2명	쉐텍홀
2013. 4.27.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2013 달서행복 호 나눔축제 참가 · 주관 : 달서구청	300,000원
2013. 5.10.	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	전공동아리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지원 · 대상 : 바라보기상당 외 6개 동아리	5,999,000원
2013. 6.29.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2013 장애가족을 위한 사랑의 콘서트 후원 · 주관 :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	1,000,000원
2013. 7.18.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2013 척수장애인 하계수련회 후원 · 주관 : 대구척수장애인협회	500,000원
2013. 9.11.	기타목적사업	독거어르신 이·미용 봉사 및 결식아동 후원 · 주관 : 신당사회복지관	1,788,400원
2013. 9.12.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2013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물품지원 · 주관 : 달서구청	5,260,000원
2013. 9.13. 2013.12.26.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지원	2013 저소득학생 돕기 생활지원금 지원 · 대상 : 고등학생 10명, 재학생 14명	15,000,000원
2013. 9.30.	기타목적사업	2013 노인시설 이·미용, 발마사지 봉사 · 복음실버타운, 참사랑실버타운	883,500원
2013.10. 2.	기타목적사업	2013 저개발국가 유학생 장학금 지원 · 건축인테리어과 1명(스리랑카) · 한국어학당 2명(스리랑카)	3,500,000원

집행일자	사업구분	사업내역	비고
2013.10.28.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순직경찰관 유가족 위로성금 전달 · 대상 : 졸업생 故 전현호 경위 유가족	9,202,820원
2013.11.15.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필리핀 태풍피해 구호성금 · 기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	5,000,000원
2013.11.28.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2013 계명가족 김장하는 날 행사 지원 · 신당동주민센터 연계(100가정) · 김장 및 쌀 100포	5,960,000원
2013.11.30.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2013 달서 김장나눔 대축제 봉사활동 지원 · 달서구청 연계 사회시설 · 김장 40기관, 연탄 9가정 지원	2,215,000원
2013.12.13.	이사회	●출석의원 : 4명(총원 6명) ●의결사항 · 2014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안) 심의 · 새생명 의료지원 사업 수혜자 심의·선발 ·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 의결	중회의실
2013.12.19.	임시총회	●출석의원 : 134명(총원 183명) ●의결사항 · 2014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안) 심의	쉐텍홀
2013.12.21.	예비비	필리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저소득국가 도서 및 서가구입 지원	3,226,600원
2013.12.24.	새생명 의료 지원비 및 예비비	2013 새생명 의료 지원 사업 · 의료 지원비 및 성경책 전달 · 수혜자 : 박정원(교직원 자녀) 900만원 노현태(재학생 자녀) 300만원	12,029,000원
총 집행 사업비 (목적사업비 : 56,405,900원 + 예비비 : 15,458,420원 = 71,864,320원)			71,864,320원

Ⅱ.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

감 사 보 고 서

1. 감사실시 현황

일 자	감사대상기간	감사범위	비 고
2014. 1.10.	2013. 1. 1.~12.31.	업무 및 회계 전반	결산종합감사

2. 중점감사 사항

- 가. 사업전반
- 나. 제반문서 보관 및 관리상태
- 다. 회계상 계수의 정확성과 처리과정
- 라. 제 법규 및 위배사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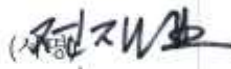
3.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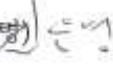
가. 법인의 사업전반, 제반문서의 보관 및 관리상태, 회계상의 계수의 정확성과 처리과정, 제 법규 및 위배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2013회계연도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증빙서류 등이 사단법인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정관 및 회계집행 기준에 부합하게 집행·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붙임 : 총회에 대한 이사장의 제출서류 및 감사의견서 1부. 끝.

2014년 1월 10일

감사 전 제 표 (사명) 

김 은 영 (사명) 

사단법인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총회에 대한 이사장의 제출 서류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제출)합니다.

2014. 1. 10.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이 사 장 김 남 석

감 사 의 건 서

본 감사인은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정관 제6장 제35조에 의거
2013회계연도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사무 및 회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관계법규 및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및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붙임 1. 2013회계연도 자금계산서 1부.
2. 2013회계연도 대차대조표 1부.
3. 2013회계연도 손익계산서 1부. 끝.

2014년 1월 10일

감사 전 제 표 (정재표)
김 은 영 (선명) 은영

(사)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이사장 귀하
(사)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총회 귀중

Ⅲ. 2013회계연도 결산서

자 금 계 산 서

(2013. 1. 1. ~ 2013.12.31.)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1. 회비	60,000,000	60,557,300	557,300	1. 경상비	1,000,000	330,170	-669,830
회비	60,000,000	60,557,300	557,300	운 영 비	1,000,000	-	-1,000,000
기타수입	-	-	-	선급법인세 정리	-	330,170	330,170
2. 특별기금 및 기부금	1,800,000	4,840,850	3,040,850	2. 목적사업비	79,500,000	56,405,900	-23,094,100
기부금	1,500,000	4,802,820	3,302,820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6,000,000	5,999,000	-1,000
이마트 마일리지	300,000	38,030	-261,970	아웃도어 및 구호활동 지원	25,000,000	20,235,000	-4,765,000
3. 기타수익	2,800,000	2,768,891	-31,109	저소득층 생활 지원금 지원	15,000,000	15,000,000	-
예금이자 수익	2,800,000	2,438,721	-361,279	새생명 의료 지원사업	20,000,000	9,000,000	-11,000,000
법인세 환급	-	330,170	330,170	기타목적사업	13,500,000	6,171,900	-7,328,100
4. 전가이월액	47,245,000	47,245,804	804	3. 예비비	31,345,000	15,458,420	-15,886,580
				순직경찰위로 성금 외	31,345,000	15,458,420	-15,886,580
				4. 차기이월액	-	43,218,355	43,218,355
합 계	111,845,000	115,412,845	3,567,845	합 계	111,845,000	115,412,845	3,567,845

대 차 대 조 표

당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과 목	당기	전기
(자 산)			(부 채)		
유동자산	43,218,355	47,245,804	부 채	-	-
보통예금(주1)	42,876,955	46,915,634			
선급법인세	341,400	330,170			
투자자산	57,188,471	57,188,471			
목적기금(주2)	57,188,471	57,188,471			
			(기본금)		
			기본금	57,188,471	57,188,471
			출연기본금	57,188,471	57,188,471
			적립금	-	-
			목적적립금	-	-
			운영차액	43,218,355	47,245,804
			당기운영차액	- 4,027,449	29,340,690
			전기운영차액	47,245,804	17,905,114
자 산 총 계	100,406,826	104,434,275	부채와자본금총계	100,406,826	104,434,275

(주1) 계좌번호 : 대구은행 086-10-006666

(주2) 계좌번호 : 대구은행 511-11-187381-4(2014.3.10. 만기)

손 익 계 산 서

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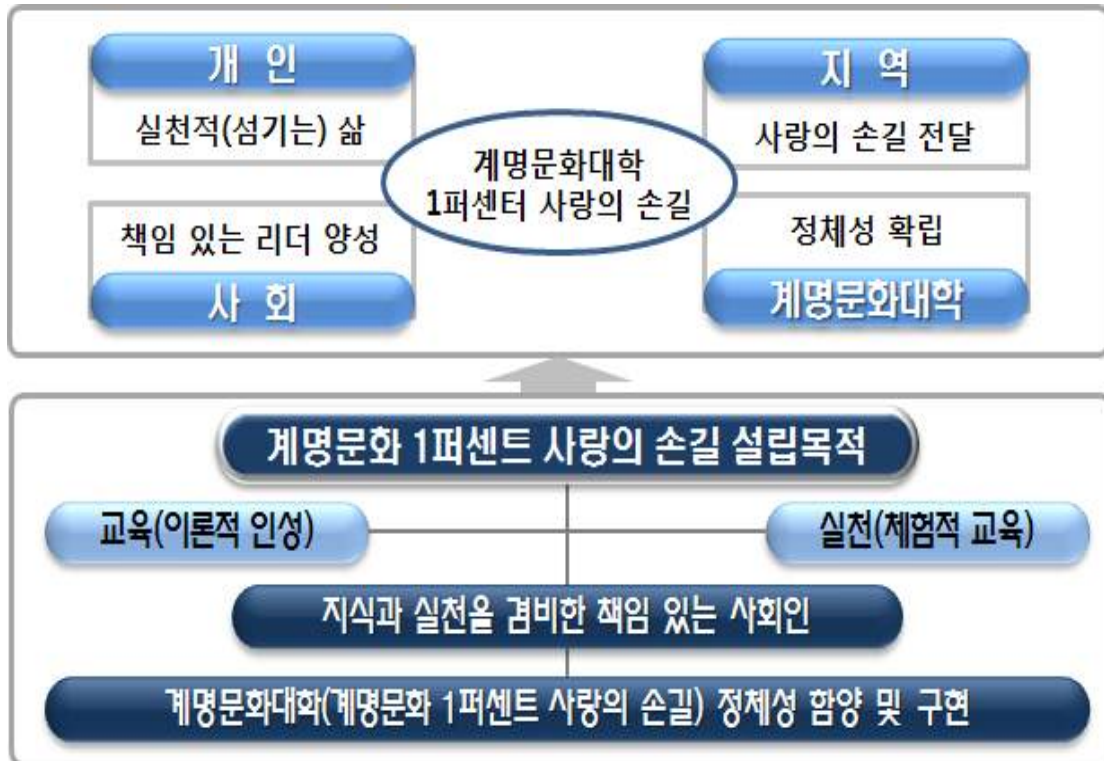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단위 : 원)

비 용			수 익		
과 목	당기	전기	과 목	당기	전기
1. 목적사업비	56,405,900	33,921,260	1. 기본수익	60,557,300	59,934,090
(1) 자원봉사프로 그램 지원	5,999,000	8,600,000	(1) 회비	60,557,300	59,934,090
(2)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20,235,000	12,235,000	(2) 기타수입	-	-
(3) 저소득층생활 지원금 지원	15,000,000	9,600,000			
(4) 새생명 의료 지원 사업	9,000,000	-	2. 특별기금 및 기부금	4,840,850	969,370
(5) 기타목적사업	6,171,900	3,486,260	(1) 기부금	4,802,820	897,760
			(2) 이마트 마일리지	38,030	71,610
2. 예비비	15,458,420	-			
(1) 순직경찰위로 성금 외	15,458,420	-	3. 기타수익	2,768,891	2,358,490
			(1) 예금이자 수익	2,438,721	2,358,490
3. 경상비	330,170	-	(2) 법인세 환급	330,170	-
(1) 운영비	-	-			
(2) 선급법인세 정리	330,170	-			
4. 운영차액	-4,027,449	29,340,690			
총 계	68,167,041	63,261,950	총 계	68,167,041	63,261,950

IV. 2014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1. 사업운영 목표



2. 사업운영 방향

- 가. 실질적 사회 봉사활동 구현
-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를 통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
- 다. 인간과 사회를 존중하는 인성의 함양
- 라. 투명한 운영을 통한 공신력 유지

3. 예산계획

2014 회계연도 예산총괄표

(2014. 1. 1. ~ 2014. 12. 31.)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과 목	당기(A)	전기(B)	증감(A-B)	과 목	당기(A)	전기(B)	증감(A-B)
1. 회비	60,000,000	60,000,000	-	1. 경상비	1,000,000	1,000,000	-
회비	60,000,000	60,000,000	-	① 인건비	-	-	-
기타수입	-	-	-	② 운영비	1,000,000	1,000,000	-
2. 특별기금 및 기부금	1,700,000	1,800,000	-100,000	2. 선급법인세	-	-	-
기부금	1,500,000	1,500,000	-	3. 목적사업비	80,000,000	79,500,000	500,000
이마르 마일리지	200,000	300,000	-100,000	① 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	8,000,000	6,000,000	2,000,000
3. 기타수익	2,500,000	2,800,000	-300,000	②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25,000,000	25,000,000	-
예금이자 수익	2,500,000	2,800,000	-300,000	③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지원	15,000,000	15,000,000	-
4. 전기이월액	37,745,000	47,245,000	-9,500,000	④ 새생명 의료지원사업	20,000,000	20,000,000	-
전기이월액	37,745,000	47,245,000	-9,500,000	⑤ 기타목적사업	12,000,000	13,500,000	-1,500,000
				4. 예비비	20,945,000	31,345,000	-10,400,000
				① 예비비	20,945,000	31,345,000	-10,400,000
합 계	101,945,000	111,845,000	-9,900,000		101,945,000	111,845,000	-9,900,000

4. 추진일정

연번	사업명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총회개최(전년도 결산 심의 등)													
2	재난구호활동													(연중)
3	새생명 의료지원													(연중)
4	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													
5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고등학생)													
6	저개발국가 유학생 지원													
7	독거노인 이·미용 및 발마사지 봉사													
8	노인복지시설 봉사													
9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재학생)													
10	추석맞이 이웃돕기													
11	김장 및 연탄나눔행사													
12	연말연시 이웃돕기 및 재난구호 지원													
13	연간 사업 평가 및 차기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5. 목적사업

가. [정례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 개 요 : 계명문화대학교 동아리 봉사단체 중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지원

■ 추진일정



■ 선정방법 : 전년도 우수동아리 우선 선정 및 신규 동아리는 사업계획서 심의 후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 선정

■ 지원규모 : 8개 동아리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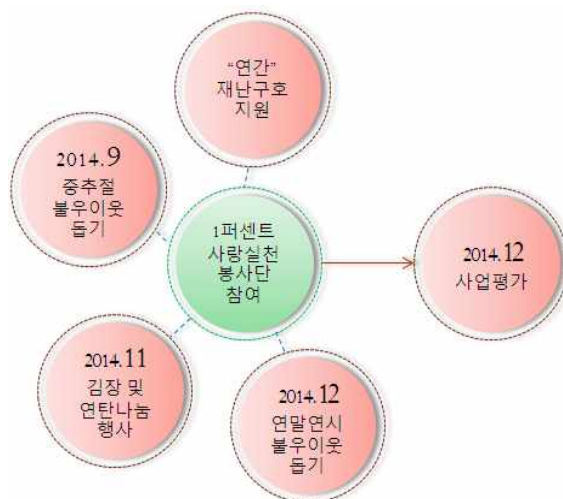
■ 지원금액 : 사업계획서 심의 후 결정

■ 예산금액 : 8,000,000원(※ 2013회계연도 예산금액(6,000,000원))

나. [정례사업] 이웃돕기 및 구호활동 지원

■ 개 요 : 불우이웃 돕기 및 긴급재난 구호 지원을 통한 사랑 나눔 실천

■ 추진일정



■ 예산금액 : 25,000,000원(※ 2013회계연도 예산금액(25,000,000원))

▲ 추석맞이 이웃돕기 : 6,000,000원

▲ 김장 및 연탄 나눔 행사: 8,000,000원((사)계명%사랑나눔기 및 달서구청과 공동 추진 모색)

▲ 연말연시 이웃 돕기 및 재난구호 지원비 : 10,000,000원

▲ 예비비 : 1,000,000원

다. [정례사업] 저소득층 학생 돕기 생활지원금 지원

■ 개 요 :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학비마련이 힘든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봉사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함

■ 추진일정

▲ 고등학생



▲ 재학생



■ 대상자 : 지역 고교생 10명, 재학생 10명

■ 예산금액 : 15,000,000원(※ 2013회계연도 예산금액(15,000,000원))

▲ 고교생 : 5,000,000원(10명*500,000원)

▲ 재학생 : 10,000,000원(10명*1,000,000원)

라. [정례사업] 새생명 지원사업

■ 개 요 : 저소득층 청소년, 우리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 자녀 중 생명 또는 삶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여 새생명 또는 정상적인 삶의 복원을 도모함

■ 내 용

▲ 유관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한 의료비 감면 모색

▲ 수술비, 치료비 등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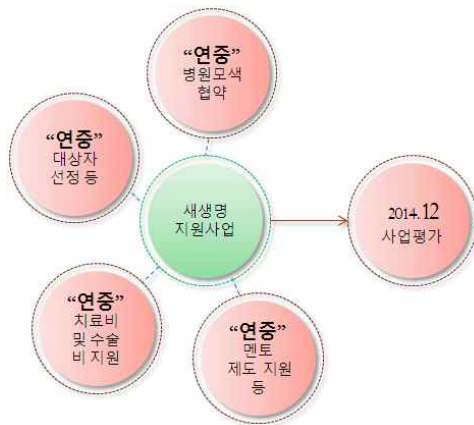
▲ 사랑의 헌혈 운동에 따른 헌혈증서

▲ 대학의 상담 및 봉사 시스템, 멘토제도 지원 등

■ 대 상 : 저소득층 청소년, 우리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 자녀

■ 절 차 : 지원 대상, 내용 및 금액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집행

■ 추진일정



■ 예산금액 : 20,000,000원(※ 2013회계연도 예산금액(20,000,000원))

마. 기타 목적사업

1) [정례사업]저개발국가 유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 목 적 : 저소득국가 유학생 적응력 제고
- 대 상 : 우리대학 유학생(한국어학당 포함)
- 추진일정



▶ 예산금액 : 6,500,000원(※ 2013회계연도 예산금액(7,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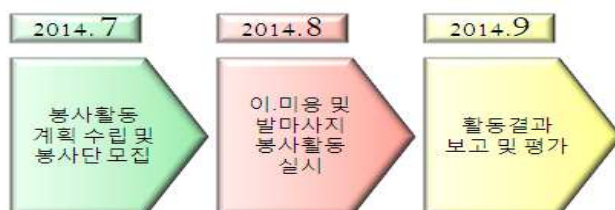
▲ 장학금 3명 * 2,000,000원 = 6,000,000원

▲ 간담회 1회(선물 포함) = 500,000원

2) [정례사업]독거어르신 이·미용 및 발마사지 봉사

- 개 요 : 지역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및 발마사지 봉사를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추진일정



■ 봉사단 :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학생 봉사단과 연계하여 구성

■ 연계기관 : 지역 복지관

■ 예산금액 : 2,000,000원(※ 2013회계연도 예산금액(2,000,000원))

▲ 차량 : 대학 지원

▲ 독거노인 선물 구입비 : 10,000원*100명 = 1,000,000원

▲ 용품 구입비 : 700,000원

▲ 현수막 : 50,000원

▲ 예비비 : 250,000원(교통비 등)

※ 참여단체는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될 수 없음.

3) [정례사업]노인복지시설 봉사

■ 개 요 :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 내 용 : 발마사지, 안마, 말벗, 무료급식 등

■ 추진일정



■ 참여자 : 학생, 교직원, 학생자치단체, 학과동아리 등

■ 예산금액 : 3,500,000원(※ 2013회계연도 예산금액(4,000,000원))

▲ 공연 준비 및 선물 구입비 : 2,000,000원

▲ 다과준비 및 재료구입비 : 1,000,000원

▲ 현수막 : 50,000원

▲ 예비비 : 450,000원

※ 참여단체는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될 수 없음

V. 정관 개정 결과

1. 개정근거 : 정관 제39조(정관변경) 및 제21조(총회의 기능),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2. 정관개정 결과

규정류 제·개정 및 폐지 안 요지			
규정명	'사단법인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정관	구분	☐ 제정, ☒ 개정, ☐ 폐지
사유	○ 정기총회와 정기이사회의 개최 일정이 상충되어 업무를 처리함에 혼선을 야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계명 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700) 계명문화대학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계명문화대학 전 구성원의 작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노력하고, 나눔을 통한 새로운 사회 봉사 및 기부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2.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봉사단 결성 및 운영 3. 자원봉사단체 지원, 이웃돕기, 긴급구호활동 지원 4. 결손가정, 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방문 및 재정지원 5. 교내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현행과 동일)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700) 계명문화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현행과 동일) 제4조(사업) (현행과 동일)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현행과 동일) 제6조(회원의 권리) (현행과 동일) 제7조(회원의 의무) (현행과 동일)	● 교명변경에 의함

를 진다. 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다.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이상 15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현행과 동일)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동일)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동일)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현행과 동일)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자구수정 •자구수정
---	---	---------------------------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현행과 동일)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20조(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21조(총회의 기능) (현행과 동일)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현행과 동일)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회의 구성) (현행과 동일)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현행과 동일)	
--	--	--

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u>년도 개시 1월 전 까지</u>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정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u>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u>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26조(서면결의 금지) (현행과 동일) 제27조(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현행과 동일) 제 6 장 재정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현행과 동일)	●자구수정 및 정기총회와 일정을 맞추기 위함
---	--	---------------------------------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취득·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현행과 동일) 제31조(수입금) (현행과 동일) 제32조(회계연도) (현행과 동일) 제33조(예산편성) ①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u>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이사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 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한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u>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5조(회계감사) (현행과 동일) 제36조(임원의 보수) (현행과 동일)	•번호 추가 및 자구수정 •예외 조항 추가 •자구수정
제 7 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제 7 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39조(정관변경) (현행과 동일) 제40조(규칙제정) (현행과 동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집행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